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
----------	----

제출년월일 : 2018. 0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목 적

- 하수도 총괄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 요금 수준 분석하여 요금 현실화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적 적자해소와 하수도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지로 물환경보전법 법률이 시행됨 현행 법률의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하여 2016년도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결과 현실화율 13.8% 수준을 3년간 매년 20% 적용 시 요금 현실화율 23.9%로 요금 조정이 요구됨

2. 주요내용

- 가. 하수도사용료를 5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누진 체계 구간을 20단계에서 15단계로 축소하여 상수도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함(안 제10조 별표 1)
- 나. 종전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통합 및 사용 요율 구간변경 하여 요율체계를 개선하여 요금 현실화 하도록 함(안 제10조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소비자정책심의 : 원안가결

2) 입법예고(2018. 01. 19 ~ 02.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평창군 수도 급수조례」”를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다 “이하 같다””를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조, 제2조제1항 중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평균군 수도급수 조례」의 상수도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³ /월)	2018년 m ³ 당 단가(원)	2019년 m ³ 당 단가(원)	2020년 m ³ 당 단가(원)
가 정 용	1 ~ 10	250	300	360
	11 ~ 20	270	320	380
	21 ~ 30	300	360	430
	31 ~ 40	330	400	480
	41 ~ 50	370	440	530
	51이상	400	480	580
일 반 용	0 ~ 50	600	720	860
	51 ~ 100	660	790	950
	101 ~ 300	730	880	1,060
	301 이상	800	960	1,150
욕 탕 용	1 ~ 200	440	530	640
	201 ~ 300	460	550	660
	301 ~ 500	480	580	700
	501이상	500	600	720
전용공업용		850	1,020	1,220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 분명 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 g단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u></p> <p>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u>군수</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1. 「<u>평창군 수도 급수조례</u>」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p> <p>2. ~ 4. (생략)</p> <p>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② (생략)</p> <p>③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u>」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p>	<p><u>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u></p> <p>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 ----- ----- ----- ----- ----- <u>평창군수</u> (이하 “군수”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u>평창군 수도급수 조례</u>」--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물환경보전법</u>」 제32조제8항----- ----- -----</p>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
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
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
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
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
으로 볼 수 있다.

⑤ (생략)

제18조(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분뇨(개인하수처
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
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등
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
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물환경보전법」 제3

8조의2-----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① -----

----- 한다. 이하 같다-----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계약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제22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
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
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 5. (생략)

② (생략)

-----.

-----.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감면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연락처	(033) 330 - 2363